

「구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」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10월 8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10월 17일

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기획조정실장 박 정 은

나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 계획 수립 및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규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및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(안 제6조)
 -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관리책임자 지정
-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(안 제9조)
- 보험·공제 등의 가입(안 제13조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조례안은

-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명문규정을 제정하고, 보험·공제 등의 가입에 대해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매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제도를 시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을 배포하는 등 각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규율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 및 책임성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.
- 구미시는 평소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과 보안사업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있으며,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더욱 명료하고 신속하게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